

서울특별시 문화 분야 출연 동의안  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998
----------	------

2017년 8월 31일  
문화체육관광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- 나. 제출일자 : 2017년 8월 14일
- 다. 회부일자 : 2017년 8월 16일
- 라. 상정결과 : 제27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
(2017년 8월 31일, 상정·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(문화본부장 서정협)

### 가. 제안이유

-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·보호·육성하고 지역 문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조사·연구·교류활동, 공연예술 활동, 디자인 문화 확산 등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4개의 출연기관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.

- 이에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문화 분야 출연 여부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.

## 나. 주요내용

### (1) 출연 개요

1) 대상기관 : 세종문화회관, 서울문화재단, 서울시립교향악단, 서울디자인재단

### 2) 관련법령 및 조례

- 세종문화회관 :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,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·운영조례
- 서울문화재단 :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,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- 서울시립교향악단 :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,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
- 서울디자인재단 :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,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

### (2) 출연의 필요성

대 상 기 관	출연의 필요성
세 종 문 화 회 관	-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 수행 및 안정적인 재정기반 확충을 위해 출연 필요
서 울 문 화 재 단	- 서울의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출연 필요
서 울 시 립 교 향 악 단	- 교향악단 활동을 통한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예술 진흥기여 등 각종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 필요
서 울 디 자 인 재 단	- 디자인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디자인문화 확산 및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 수행을 위하여 출연 필요

### (3) 주요 사업

대 상 기 관	주 요 사 업
세 종 문 화 회 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세종문화회관의 운영</li> <li>- 공연예술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</li> <li>-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·관리, 보급 및 조사·연구</li> <li>-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등</li> </ul>
서 울 문 화 재 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문화예술의 창작·보급 및 문화예술활동의 지원</li> <li>-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구</li> <li>- 국내·외 문화예술 교류</li> <li>- 시민의 문화향수 및 창의력 증진</li> <li>- 지역문화의·육성 지원 및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</li> </ul>
서 울시립교향악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음악연주활동, 연주자 육성사업</li> <li>- 음악·공연 교육사업 및 조사·연구</li> <li>- 공연예술시설의 관리·운영</li> <li>- 국내·외 공연예술단체와의 교류·협력 등</li> </ul>
서 울디자인재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등의 운영</li> <li>- 디자인정책 연구사업, 디자인 관계 자료의 수집·관리, 조사 연구 및 전시·보급, 디자인 문화 확산 및 디자인 산업 진흥 활동</li> <li>- 패션·봉제산업 지원 사업 등</li> </ul>

## 다. 참고사항

### (1)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

-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### (2) 예산조치 : 2018년도 예산편성

### (3)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.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김정욱)

- 본 동의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의거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세종문화회관, 서울문화재단, 서울시립교향악단, 서울디자인재단 등 문화분야 4개 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음.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은 “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”고 규정되어 있는데, 이는 2014년 5월 28일 개정되어 2016회계연도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 규정임.

####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  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  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-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2017년도 문화본부 소관 세종문화회관, 서울문화재단, 서울시립교향악단, 서울디자인재단 등 문화분야 4개 재단의 사업내용, 출자·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·출연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

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·보호·육성하고 지역문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조사·연구·교류활동, 공연예술 활동, 디자인 문화 확산 등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 분야 4개 재단에 대한 출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- 다만, 서울디자인재단 업무 중 ‘패션·봉제산업 지원 사업’의 경우 소관은 경제진흥본부 문합융합경제과에서 담당하나 예산은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에서 출연금으로 편성되어 사업수행과 예산편성이 불일치하는 바 적절한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.

5. 토론요지 : 없음.

6.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: 구성하지 않았음.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출석위원 전원 찬성)

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# 서울특별시 문화 분야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1998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7년 8월 14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·보호·육성하고 지역 문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조사·연구·교류활동, 공연예술 활동, 디자인 문화 확산 등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4개의 출연기관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
- 나. 이에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문화 분야 출연 여부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출연 개요

1) 대상기관 : 세종문화회관, 서울문화재단, 서울시립교향악단,  
서울디자인재단

### 2) 관련법령 및 조례

- 세종문화회관 :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,  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·운영조례

- 서울문화재단 :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,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- 서울시립교향악단 :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,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
- 서울디자인재단 :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,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

## 나. 출연의 필요성

대 상 기 관	출연의 필요성
세 종 문 화 회 관	-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 수행 및 안정적인 재정기반 확충을 위해 출연 필요
서 울 문 화 재 단	- 서울의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 필요
시 립 교 향 악 단	- 교향악단 활동을 통한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예술 진흥기여 등 각종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 필요
서 울 디 자 인 재 단	- 디자인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디자인 문화 확산 및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 필요

## 다. 주요 사업

대상 기관	주요 사업
세종문화회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세종문화회관의 운영</li> <li>- 공연예술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</li> <li>-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·관리, 보급 및 조사·연구</li> <li>-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등</li> </ul>
서울문화재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문화예술의 창작·보급 및 문화예술활동의 지원</li> <li>-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구</li> <li>- 국내·외 문화예술 교류</li> <li>- 지역문화의·육성 지원 및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</li> </ul>
시립교향악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음악연주활동, 연주자 육성사업</li> <li>- 음악·공연 교육사업 및 조사·연구</li> <li>- 공연예술시설의 관리·운영</li> <li>- 국내·외 공연예술단체와의 교류·협력 등</li> </ul>
서울디자인재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등의 운영</li> <li>- 디자인정책 연구사업, 디자인 관계 자료의 수집·관리, 조사 연구 및 전시·보급, 디자인 문화 확산 및 디자인 산업 진흥 활동</li> <li>- 패션·봉제산업 지원 사업 등</li> </ul>

## 3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

-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### 나. 예산조치 : 2018년도 예산편성

###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문화정책과 문화관리팀 전하연 (☎ 2133-2527)